

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소유자	성명(명칭)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		
	전자우편주소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자동차	등록번호			
	사용본거지			
재발급 사유	[]분실·멸실 []훼손 []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[]기타			
분실 사유	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8조제2항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700원. 다만, 전자 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는 600원입니다.
------	----	---

유의사항

-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.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8조제1항)
-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.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1항제8호)
-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,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(등록사무소 또는 시·군·구)에 알려주십시오. 다만,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.